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문진석 · 김정호
임미애 · 박용갑 · 한민수
박정현 · 이정문 · 박홍배
이춘석 · 송재봉 · 복기왕
안태준 · 김기표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·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,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,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,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(안 제48조의2 삭제).

법률 제 호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8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·요금의 신고 등</u> 2. <u>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</u> 3. <u>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 명령</u> 4. <u>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</u> 	<p><삭 제></p>